

분배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김 순 덕 외 5명

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



2726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7 민사부 귀중

분배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김 순 덕 외 5명
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

이 사건 소송의 분배관리인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2조에 따라 별지와 같은 분배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분배계획의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라고 하여, 전자공고의 방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4명의 구성원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전자공고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공고에 추가하여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계획의 우편발송을 위한 비용을 분배비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2017. 11.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자 2017카합34074 결정), 73,482,262원이 추가 권리실행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자 2017카합34074 결정문

2017. 11. 3.

분배관리인

법 무 법 인 한 누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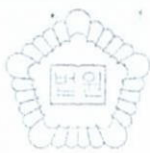
담당 변호사 김 주 영



담당 변호사 구 현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7 민사부 귀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카합34074 소송비용액확정

- 신 청 인
1. 김순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 유봉한
서울 서초구 효령로46길
 3. 이해욱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4. 이연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5. 강효숙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 이연택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김주영

피 신 청 인 도이치뱅크 아게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18-19(서린동, 영풍빌딩)
대표자 이사 영국인 존크라이언(John Cryan)
공동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김종갑, 박현남

주 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각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2,247,077원 임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각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
부



2017. 10. 31.

사 법 보 좌 관

조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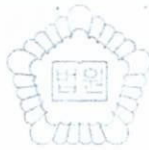


2017-0105465542-6BD21

원본조각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2 / 4

대한민국법원



소 송 비 용 계 산 서

2017카합34074

신청인 : 원고들(대표당사자) (2012가합17061)

제1심 소가 : 8,585,896,483원

(단위 : 원)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50,229,48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9,800,000 + (8,585,896,483 - 500,000,000) \times 0.005$
	인지대	15,302,800	$(8,585,896,483 \times 0.0035 + 555,000) \times 1/2^{1)}$
	송달료	65,770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71,930 제외)
	보관금	7,782,660	공고비
1심 관련 소송허가신청 사건 2012카기1273 2013라1426 2014마188 2015라619 2016마251	인지대	3,000	1심 1,000원 + 3심 2,000원
	송달료	75,910	1심 64,980원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64,980 제외) 3심 10,930원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21,570 제외)
소계		73,459,622	
본안비용소계		73,459,622	1심 73,459,622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1,000	
	송달료	21,840	기발생 14,440 + 결정정본 7,400 (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신청비용소계		22,840	
합계		73,482,462	본안비용 73,459,622 + 신청비용 22,840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각 금 12,247,077원

$= 73,482,462 \times 1/6$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 2항을 적용한 금액



등본입니다.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양주열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분배계획안

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김 순 덕 외 5명
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

1. 총원의 범위 및 채권 총액

가. 총원의 범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31.경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원금비보장형)” 을 매수하였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들

나. 채권 총액 (손해배상채권 원금)

8,585,896,483원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 8,585,89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2가합17061 판결)

- 73,482,462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자 2017카합34074 결정)

나.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1) 권리실행금액

- 12,084,713,960원(기존 권리실행금액 12,011,231,498원 + 예상 권리실행금액 73,482,462원)
- 1심 판결 후 판결원리금 가지급으로 이루어진 기존 권리실행금액은 12,011,231,498원¹⁾이며, 위 금액은 2017. 1. 24. 전액 현금으로 임의 지급받아 법원보관금규칙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공탁되어 있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4074호 사건)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실행금액은 73,482,462원임.

2) 분배할 금액

분배할 금액은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서 소송비용 23,252,980원과 변호사보수 금 1,981,853,197원(계산내역은 아래 3. 나. 와 같음)을 공제한 금 10,079,607,783원임.

1) 8,585,896,483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3) 권리실행금액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²⁾는 분배관리인에게 귀속시켜 분배관리인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가.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1) 소송비용

23,252,980원(첨부 1. 소송비용 내역)

2) 분배비용

약 17,988,800원 [= 분배관리인 보수³⁾ 11,000,000원 + 분배계획안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1,716,800원(464명 × 3,700원) + 권리확인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1,716,800원(464명 × 3,700원) + 현금 계좌 이체 수수료
약 232,000원(464명 × 500원) +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약 23,200원(464명

2)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재판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639호, 시행 2017. 3. 1.]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 0.1%의 이자가 지급되는 바, 이 분배계획안 작성일을 기준으로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3) 분배관리인의 보수는 분배관리인을 돕는 실무진들의 보수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정한 분배관리인의 업무인 분배계획안 작성, 464명의 구성원의 권리신고에 대한 각 확인, 분배보고서, 분배종료보고서 각 작성 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는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50원) + 공인회계사의 보수⁴⁾ 약 3,300,000원]

3)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지급방법

- 소송비용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실행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함.
- 분배비용은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만약 분배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배관리인이 분배관리인보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고,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 처리 시에 잔여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나. 변호사보수

1) 보수액

- 1,981,853,197⁵⁾원(12,011,231,498원 × 0.165)
-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소자들과 원고대리인간에 체결된 사건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소송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소외 한국투자증권 또는 피

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함.

5) 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로부터 추가 만기상환원리금(한국투자증권이 2009. 8.경 지급한 만기상환금을 넘어서는 추가 만기상환원리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받아내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해당 경제적 이득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2심 제기 후 판결, 화해, 합의 등으로 추가 만기상환금(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만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민사본안소송의 2심 제기 후 피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원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손해배상원리금에 해당하는 금 12,011,231,498원의 16.5%(15%에 부가세 1.5%를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 1,981,853,197원이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함.

2)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급함.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함.
- 각 구성원의 손해액은 각 구성원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 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8.6%)과 실제

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9%)과의 차액임.⁶⁾

- 결국 각 구성원이 지급받을 현금의 액수는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 - 소송비용 23,252,980원 - 변호사보수 1,981,853,197원) × 해당구성원의 손해액 /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임.

5. 권리신고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권리신고의 기간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3개월 안에 권리신고서가 분배관리인에게 도달하여야 함)

나. 권리신고의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우편번호 : 06601)

다. 권리신고의 방법

첨부 3. 안내문을 참고하여 첨부 2. 권리신고서 양식에 따라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위 권리신고의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 제출하거나, 분배관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함.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2가합17061 판결문 별지3 손해액표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함.

6. 권리의 확인방법

가. 권리의 확인방법

권리의 확인은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1273호)에서 소외 한국투자증권이 2012. 4. 9.자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매수자 인적사항, 매수 및 상환내역에 의하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함.

나. 권리확인 통지 일시 및 방법

권리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구성원과 피고에게 통지함.

다.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방법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신고인 또는 피고는 권리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가. 분배금의 수령기간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간

나. 분배금의 수령장소 및 방법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이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주소변경의 신고

분배계획 고지 이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게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 내역
2. 권리신고서
3. 안내문

첨부 1

소송비용 내역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인 지 대	15,302,800	
	송 달 료	65,770	실제 지출한 비용 산입(환급액 71,930원 제외)
	보 관 금	7,782,660	신문공고비
본안관련 소송허가 신청사건	인 지 대	3,000	1심 1,000원 + 3심 2,000원
	송 달 료	75,910	1심 64,980원 실제지출비용 산입(환급액 64,980원 제외) 3심 10,930원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21,570원 제외)
본안비용 소계		23,230,140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1,000	
	송달료	21,840	
신청비용 소계		22,840	
합 계		23,252,980	

송달료(예납)영수증(납부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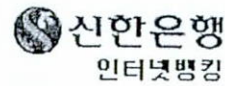
은행번호 : 12-0770322-1

납 부 당 사 자 사 용 란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10)			사건번호	
	성명	김순덕			금액	61,200 원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금 계좌번호	①신한계좌입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025379500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12 (16:02:21)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SHINHAN FINANCIAL GROUP. ALL RIGHTS RESERVED.

납부확인증

신한은행

송달료(추납) 납부서(법원제출용) -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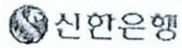
납 부 당 사 자 사 용 란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210)		사건번호	2012-카기- 1273
	성명	김순덕		금액	9,750 원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①신한계좌입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환급계좌 기등록
		②타은행계좌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013.09.09 (14:57:24)
납부자 : 김순덕 (인)

신한은행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법원코드		100	관서계좌	181754	
납부금액		1,000 원	은행 수납번호	14-088-00160682-3	
납부인사용란	납부인	성명	김순덕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건	환급계좌	신한	계좌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대법원			
심급		① 1심 ② 단독사건항소 ③ 합의사건항소 ④ 행정사건 1심 ⑤ 상고심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4088001606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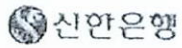
2014.01.22 (14:00:16)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김순덕 귀하

*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법원코드	100	관서계좌	181754
납부금액	1,000 원	은행 수납번호	14-088-00160694-4
납부인 사건	성명	김순덕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환급계좌	신한	계좌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대법원		
심급	① 1심 ② 단독사건항소 ③ 합의사건항소 ④ 행정사건 1심 ⑤ 상고심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4088001606944

2014.01.22 (14:01:45)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김순덕 귀하

*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송달료(예납)영수증(납부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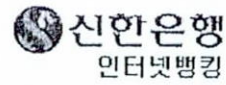
은행번호 : 14-0255322-1

납 부 당 사 자 사 용 란	법원명	대법원 (100)		사건번호	
	성명	김순덕		금액	32,500 원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①신한계좌입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예금주	전화번호	025379500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대법원

2014.01.22 (13:58:30)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SHINHAN FINANCIAL GROUP. ALL RIGHTS RESERVED.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납 부 인 사 용 란	법원코드		210	관서계좌	180056
	납부금액		229,500 원	법원별 납부번호	12-088-00375318-3
	납 부 인	성명	김덕순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 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심급		① 1심 ② 단독사건항소 ③ 합의사건항소 ④ 행정사건 1심 ⑤ 상고심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02.29 (16:21:23)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김덕순 귀하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SHINHAN FINANCIAL GROUP. ALL RIGHTS RESERVED.



송달료(예납)영수증(납부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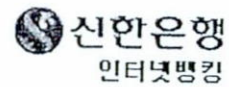
은행번호 : 12-0654385-1

납 부 당 사 자 사 용 란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10)			사건번호	
	성명	김덕순			금액	137,700 원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금 계좌번호	①신한계좌입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025379500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9 (16:20:21)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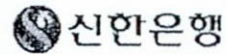
은행번호 : 2012-007256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 - 가합 - 17061	물건번호	
납부금액	1,485,000 원	보관금종류	민사에납금
납부자성명	김순덕	주민등록번호	
납부자주소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전화번호	02 - 537 - 9500		
환급계좌번호	신한은행)	법원관리점	법조타운법원(출)

위의 금액을 보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2.03.12 (17:08)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지점



본 납부확인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SHINHAN FINANCIAL GROUP. ALL RIGHTS RESERVED.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은행번호 : 2016-015393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0017061	물건번호	0
납부금액	40,000,000원	보관금종류	민사에납금
납부자성명	김순덕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납부자주소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전화번호	02-537-9500
환금계좌번호	(신한)	법원관리점	법조타운법원(출) 지점

· 위와 같이 보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2016015393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지점

2016.06.09

(11:33:28)



· 본 납부확인증은 인터넷뱅킹에서 인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등인지대 현금영수필 확인서 (납부자용)

법원코드		210		관서계좌	180056		
납부인 사용란	납부금액		15,073,300원		납부번호	16-088-03006150-1	
	납부인	성명	김순덕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건	환급계좌	신한		계좌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심급		① 1심 ② 단독사건항소 ③ 합의사건항소 ④ 행정사건 1심 ⑤ 상고심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6088030061501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2016.10.05 (14:52:28)

김순덕 귀하



· 본 납부확인증은 인터넷뱅킹에서 인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예납 영수증(납부자용) - 재발급

은행번호 : 17-3530910-0

납부 당사 자 사 용 란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210)			사건번호	
	성명	김순덕			금액	50,000원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계좌번호	①신한계좌입금	신한은행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735309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10:34:44)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 본 납부확인증은 인터넷뱅킹에서 인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 리 신 고 서

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김 순 덕 외 5명
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1. 권리신고인의 인적사항

가. 권리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성명 또는 상호 ()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나. 권리신고인의 주소

1) 주소 ()

2) 전자우편 주소 ()

다.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담당자 성명 표시) ()

라. 휴대전화번호¹⁾ ()

※ 신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1)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배절차 진행상황이 통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리신고의 내용

손해액 ()원

※ 첨부 3. 안내문 1. 항을 참조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여 권리신고 장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우편번호: 06601)}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권리확인통지 방법(통지받고 싶은 방법을 택일하여 ○ 표시)

주소로 우편 송달	전자우편 통지

● 첨부 : 신분증 사본

2017.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분배관리인 귀중

안 내 문

귀하께서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을 분배받지 못하실 수 있는바, 권리신고서의 세부사항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권리신고서 2.항에 기재할 손해액

귀하께서 권리신고서 2.항의 ‘손해액 ()원’ 부분 괄호 안에 기재하실 손해액은 별지 계산표의 ‘손해액’ 란에 쓰인 금액입니다. 위 손해액은 귀하께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 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8.6%)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9%)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실제 분배받게 되는 분배금은 위 손해액과 그 수액이 다른데{분배 받으실 금액은 판결금(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지급받게 될 소송비용액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¹⁾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을 분배금이 아닌 위 손해액을 권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지급받을 분배금이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지급받게 될 소송비용 합계 12,084,713,960원 - 소송비용 23,252,980원 - 변호사보수 1,981,853,197원) × 귀하의 손해액 / 전체구성원의 손해액. 변호사보수는 이 사건 제소자들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판결금의 16.5%(15% 및 부가가치세 1.5%)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권리신고서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타인명의계좌로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권리신고 장소인 법무법인 한누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전화번호 : 02-537-9500))로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계좌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